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9 선고 2020가소60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각 1,94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관련 법리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인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는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상호 합의로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2. 판단

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8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후인 2020. 2. 7.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임인인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급비용에 잔액이 있으면 이를 위임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임계약의 해지 시점, 이 사건 수임의 경위, 이미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해지로 인하여 피고가 면하게 된 위임 사무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취득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은 선임료 중 40%에 해당하는 2,112,000원(5,280,000 X 4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수임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착수금 5,280,000원 및 소송비용 예치금 720,000원 합계 6,000,000원 중 위와 같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 2,11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80,000원을 원고와 선정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각 1,944,000원(= 3,888,000원 X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신정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